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233

제출년월일 : 2023. 8. 14.

제 출 자:안산시장

□ 제안이유

- 2017년 제정 이후, 5년간 현행 유지된 조례에 대하여 국가정책 및 우리시 도시재생 현안에 부합하도록 신설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현행 조례 규정을 정비 개정하고,
- 도시재생뉴딜사업 준공 도래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공익목적 기준, 감면대상, 운영평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 경쟁력과 공동체를 회복하여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에서 위임한 공동이용시설 종류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를 우리 시 여건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재정비(안 제3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원금액의 환수'인용 법령 개정(안 제29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중 건폐율 완화 범위 삭제(안 제33조)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목적 및 대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 34조)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5조)
- 공동이용시설 운영평가 실시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6조)
- 그 밖에 공동이용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르도록 명확한 적용 기준근거 규정 신설(안 제37조)
- 현행 조례 제34조를 개정(안) 제38조로 조항 변경(안 제38조)

- □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1】
-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3】
-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3. 6. 30. ~ 7. 20. (21일간)
-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 4]
 - 방침결정문: 【붙임 5】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주민"을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주민"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 1. 주민커뮤니티공간,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의 안전을 위한 시설
- 2. 도시재생 교육 등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시설
- 4. 문화·복지·창업 등 주민지원을 위한 시설
- 5. 공연·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 제29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4조,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32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중 "영 제39조제2항"을 "영 제39조"로 한다.

제34조를 제38조로 하고,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4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 활동
 - 2. 주민의 건강,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

제를 해결하는 활동

-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문화예술 등 주민생활 편의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 4. 창업지원,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3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 2. 제2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 3.「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 5. 그 밖에 시장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③ 제2항에 따른 대상별 감면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절차 등) ① 제34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신청서를 사 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물건의 표시
 -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 4. 사용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사항이 제34조에 적합한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용을 승인하며 허가서를 교부한다.
 - ③ 시장은 사용인이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신청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그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1항과 제2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6조(공동이용시설의 운영평가) ① 시장은 매년 1월 공동이용시설 사용인으

로부터 사용신청서를 제출받고, 12월에 수행실적과 운영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동이용시설 운영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매년 10월 공동이용시설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 제37조(공동이용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공동이용시설 사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 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5	소관 실·과	도시재생과					
입	실·과장 직위·성명	도시재생과장 김 동 휘					
안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생정책팀장 이 은 미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신 동 호 (행정 273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 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
(이하 "영"이라 한다) <u>제3조제5호</u>	제3조제6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	
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	1. 주민커뮤니티공간, 보안·방범시
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설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의 안전을 위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도서	2. 도시재생 교육 등 주민역량강화를
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	위한 교육 시설
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4. 문화·복지·창업 등 주민지원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u>위한 시설</u>
<u>〈신 설〉</u>	5. 공연·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
	시설 등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
$\underline{5}$. 그 밖에 <u>주민</u> 이 공동으로 사용하	<u>6</u>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주민-
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u>제1호부터 제5호까지</u> -
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29조(지원금액의 환수) ②	제29조(지원금액의 환수) ②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안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법률」 제12조 및 제34조,「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및
	<u>제27조</u>
제32조(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제32조(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①·② (생 략)	운영·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 제33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 제33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 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 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 1.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 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times (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 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이내 (기반시설 부지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포함한다.)
 -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 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 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제84 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 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 주차장법 시 행령 ·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례) 〈삭 제〉

	_	 _	 	 _	 _	_	_	3	셌	3	92	<u> </u>	_
-	-	 	 	 -	 -	_	_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	 -	_	_			-	_	-	_
-		 	 	 -	 -	-	-				-	-	_
_													

〈신 설〉

- 제34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
 -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역 <u>량강화 활동</u>
 - 2. 주민의 건강, 이익을 보장하며, 공 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문 화예술 등 주민생활 편의증진과 공 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 4. 창업지원,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 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 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3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 2. 제2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 3.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사 회적경제 조직
 -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 기업
 - 5. 그 밖에 시장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③ 제2항에 따른 대상별 감면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 제3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절차 등) ① 제34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의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신청 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
 - 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물건의 표시
 -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 4. 사용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 사항이 제34조에 적합한 경우, 신 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용 을 승인하며 허가서를 교부한다.
 - ③ 시장은 사용인이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신청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그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1항과 제2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36조(공동이용시설의 운영평가) ①
	시장은 매년 1월 공동이용시설 사용
	인으로부터 사용신청서를 제출받고,
	12월에 수행실적과 운영능력을 평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
	동이용시설 운영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매년 1
	0월 공동이용시설 운영평가계획을
	<u>수립하여야 한다.</u>
<u>〈신 설〉</u>	제37조(공동이용시설 사용에 관한 사
	항) 공동이용시설 사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안산시 공
	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4조 (생 략)	<u>제38조</u> (현행 제34조와 같음)